

서울시교육청  
학생 참여 단  
출범 200일 맞이  
**200분 토론!**

# 학생이 함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

토론자료집

**일시** 2012년 1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토즈 종로점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서울시교육청  
학생 참여 단  
출범 200일 맞이  
**200분 토론!**

## 학생이 함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민의 힘으로 제정 된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출범한지도 200일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청소를 할 때만 잠깐 학교의 주인이 될 뿐입니다.

학교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이자, 권리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진짜 학교와 교육의 주인이 되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출범 200일이 되는 12월 1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속에서 학생참여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학생이 함께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를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거침없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 자료집 순서

<b>토론시간표</b> .....	1p
<b>토론안내</b> .....	2p
<b>토론문1</b> 서울시교육청 .....	3p
<b>토론문2</b>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	4p
<b>토론문3</b>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	7p
<b>토론문4</b>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	15p

# 토론 시간표

01:10 ~ 01:20	10분	여는 시간	
01:20 ~ 02:00	40분	<b>1부 [토크]</b> 학생이 말하는 서울학생인권 현실	
02:00 ~ 02:50	50분	<b>2부 [토론]</b> 학생이 함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 ① 지정토론 - (서울시교육청) - 김혜주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 한상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 미소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02:50 ~ 03:05	15분	쉬는 시간	
03:05 ~ 04:30	85분	<b>2부 [토론]</b> 학생이 함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 ②	전체토론

# 토론 안내

## [토론 주제]

- 1)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300일, 학생참여단 출범 200일 : 학생참여 현실에 대한 진단
- 2) “학생이 함께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를 위한 학생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0분간의 토론이 더욱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정토론자뿐 아니라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줍어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 ■ 문자발언

토론회 중간중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수줍어 이야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문자발언을 준비했습니다. **010-2840-332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사회자가 중간중간 발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자유발언

질의응답시간과 자유토론시간에 자유롭게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건 기본이겠죠? 궁금하신 점, 다른 의견, 새로운 제안 등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 ■ 쪽지발언

학생참여에 대한 참가자분들의 의견, 제안, 아이디어 등 다양한 생각들을 **익명쪽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적어주신 쪽지들을 모아서 전체토론을 풍성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는 쉬는 시간 이후 쪽지함으로 모을 예정입니다.)



김혜주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 1. 서울학생인권조례시행 속에서 현재 학생참여에 대한 진단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지 어느덧 3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직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홍보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얼마 전, 광노현 전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내려오시게 되시면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여러 언론이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잃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 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효력을 잃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무효화가 됐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서울시의 학교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학생인권도 여전히 존중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모습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다보니 학생들은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둔감해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버젓이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여전히 학교 안에서의 학생참여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것들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각 학교는 민주적으로 학교 규칙을 개정해야했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정하거나, 심지어 아예 학교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H중학교의 사례** : 학칙을 개정하는 토론과정에서 일반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법제관’ 학생들만 학칙 개정 참여 해 일반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제관’ 학생들은 1학기 회장들로만 구성된 학생들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적용받는 학교규칙을 만드는데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1학기 회장들로 구성된 학생들로만 하여금 학칙개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비민주적입니다.

H중학교 말고도 상당한 수의 서울시 학교들이 비민주적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 시 선도부학생들만 참여하는 학교들도 많으며, 아예 학생들의 의견을 억압하며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민주적인 학칙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강제적인 교칙을 집행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참여가 힘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교사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제재를 들 수 있습니다. H중학교의 사례를 이야기 해 보자면, H중학교의 한 학



생은 학생참여단에서 주최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홍보하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물을 각 교실마다 붙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교사들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학생은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신청했고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참여보장 항목을 들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학생을 보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한다며 주장했고 교장은 학교를 총괄한다는 법령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교에 홍보물을 붙이는 것마저 검열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E고등학교에서는 학생주임 선생님이 두발을 규제하였고 등교할 때 이를 어긴 학생들을 가려내어 벌을 주었습니다. 이에 학생은 학생주임 선생님께 항의 하였지만 역시 교장은 학교를 총괄한다는 법령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례로 미루어 보아,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학생을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통제되어야 하며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하고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아랫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F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반인권적인 학교규칙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력 때문에 안타깝게도 학생회장선거 출마를 제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G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참여를 막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 학생참여를 막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하면, 벌점 같은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페널티에 학생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행위내용	징계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및 전학	
제 9 항	집 단 행 동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참고자료 : 서울 N중학교의 징계 규정.

## 2. 학생이 함께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를 위한 학생참여단의 학생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렇다면 현재 꺼져가고 있는 학생참여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청에서

보지 못하는 학교현장의 인권침해들을 찾아내어 교육청에 학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참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학생참여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 학생참여단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학생참여를 위한 정책들을 교육청에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참여 보장과 학생인권 관련 정책들을 다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학생참여단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각 학교의 학교 규칙들에 학생참여를 억압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찾아내어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학생참여단의 일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교에서는 인터넷에 학생인권조례 전문을 올리고서 온라인 인권교육을 이수했다고 보고하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참여단이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학생참여단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청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 몫 하는 듯 합니다. 결국에는 학생참여단의 활동 자체도 학생참여이기 때문에, 학생참여단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학생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날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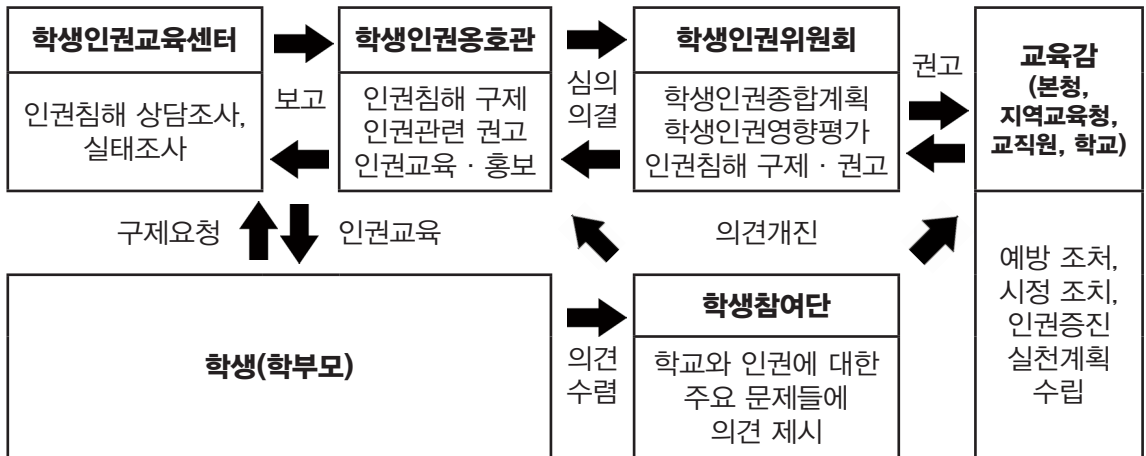
학생인권과 학생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

학생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함께 또 같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장에서는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 인권 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로, ①학생 인권에 관한 학생·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②학생 인권에 관한 정기적 실태 조사, ③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 ④학생인권위원회, ⑤학생참여단 구성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⑥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증진체제 흐름]



학생인권위원회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 33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공식기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생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로 ①학생인권종합계획, ②학생인권영향평가, ③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등 학생인권에 대한 핵심적인 사안들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하는 전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④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수렴 및 공론화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학생인권조례의 목표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 및 구제와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의 든든한 벗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김인식 위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참여단? 이건 덤!

학생인권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위하여 행동할 때 학생인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7조에서는 학생인권문제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학생참여단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학생인권의 주체는 학생인 만큼 학생 스스로 교육정책과 학생인권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참여단은 공개모집 → 추첨을 통해 선발된 학생과 특별절차를 통해서 선발·위촉된 학생 등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정책,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실천계획 등 학교와 인권에 대한 주요 문제들에 의견을 제시하는 학생참여기구입니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언제 오나요? 보고 싶나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문제를 전담하면서 학생인권위원회와 함께 학생인권보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전문가로서, 학생인권의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38조는 이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규정하여, 학생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총괄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관점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됩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함으로써, 외부의 인권전문가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학생인권센터에 전화하면? 즐거워져요^^

위에서 설명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센터장의 임무를 맡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를 받아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일을 수행합니다. 센터에는 사무직원등 현재 12명의 상근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폭력 평화교육(2명), 상담·조사관(4명), 인권교육(1명) 등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학생인권센터가 수행하는 주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획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거나 혹은 그러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고 학생인권침해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구제방안을 마련하거나 혹은 제도적·구조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위원회, 혹은 교육감 등이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생인권센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나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내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415호, 전화 : 02-3999-080~086)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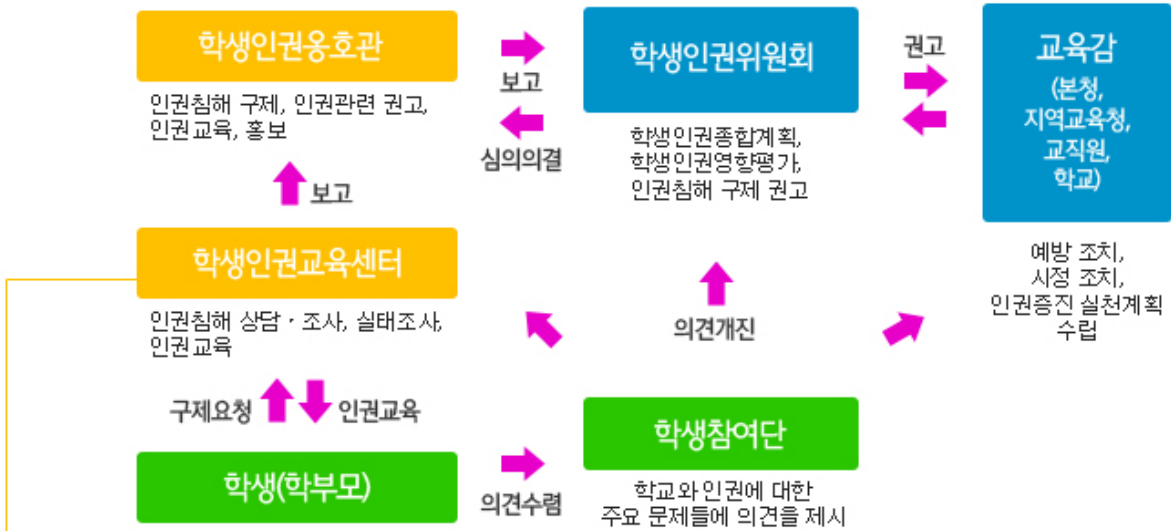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모진 바람이 불어오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지요.

2013년 1월이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민 10만 명의 서명과 많은 학생들의 염원으로 제정되어 공포된지 한 해가 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학생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이 자명해지고, 교육청과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책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침해행위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우리 교육 큰 과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인권침해로 인하여 상처받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일을 겪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조례의 일부로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며, 조례 정착화의 더딘 모습에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침해가 중단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오기를 바라고 계신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위원회와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가

## ● 인권침해 권리구제 체계



## ● 인권교육센터 업무체계



서울학생인권조례 내 인권침해권리구제와 인권교육센터 업무체계의 흐름

제정이 되었음에도 조례에 큰 기대를 보내주셨던 학생들이 크고 작은 실망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유로 흔들리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 정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은 소수의 의사가 아닌, 학생도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진실을 확인하라는 시대의 요구가 활화산처럼 분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당당하게 부정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이러한 뉘우침과 부끄러움들이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가 아닌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인정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학생인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속에서 학생인권조례라는 싹이 자라났습니다. 이 싹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향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모진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학교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가 학생인권위원, 학생인권옹호관이 됩시다.

학생인권은 너무나도 자명한 권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억울한 일을 겪으면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을 지켜내고, 학생인권침해행위가 부당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인권옹호관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학생인권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한 사람의 학생인권옹호관이 되어주는 것을 우리 위원회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정착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체계 구축 등을 아래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학교 현장 인프라	교육청 지원 체계
1단계	학생인권조례 홍보	- 포스터 부착 - 인권교육 실시	- 포스터 제작·배포 - 인권교육 강사풀 구성·운영
2단계	학생인권 존중 공감대 형성	- 학생인권 동아리 운영	- 인권친화적 학교 및 생활교육 우수사례 발굴 홍보 - 학생인권옹호관 취임식에 학생, 교사, 학부모 초청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제정과 홍보 계획 마련
3단계	인권친화적 학교 인프라 구축	- 생활지도부를 생활인권부로 명칭 변경 - 학생생활규칙 제·개정 - 학생자치로 인권조례 정착 모니터링단 운영 (예 : 학생회 내 집행부서에 인권부 구성, 학생인권 동아리, 모니터링단 운영 등)	- 생활인권부 담당교사 연수 - 학교생활규정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생활규정 제·개정 매뉴얼 제작·보급 - 학생인권조례 학내 모니터링단과 협력체계 구축
4단계	내실있는 인권교육 시행	- 대상별 의무교육 시행 - 교사 인권교육 역량 강화 등	- 인권교육 계획수립 -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및 표준 교안 마련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교 내 인권교육 전담 교사 지정
5단계	추진 결과 점검 및 평가	- 학생인권조례 이행 관련 자체 점검 등 평가	- 학생인권조례 이행 평가를 마련 - 평가 후 교육청의 2013년 계획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 참고자료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구축 방안과 서울교육청의 지원체계 마련 요청안>, 학생인권위원회 의안 12-14



앞의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2단계의 학생인권 동아리의 운영입니다.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의 경우, 많은 학교들에 인권동아리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의 참여로 학교의 운영과 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두 곳의 학생들 모두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의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학교 내에서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학교현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인권위원, 학생참여단, 학생인권옹호관이 되어 자신과 주변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항의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에([www.sturights.or.kr](http://www.sturights.or.kr)) 공유하여 주시거나, 전화상담(02-3999-080~5),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와 학생인권상담·조사관들이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학생을 포함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선거기간 중 위원회 주최의 토론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선거기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 학생인권조례 정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약하기 위한 잠시간의 준비기간이라 생각하고 학생인권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연한 권리임이 통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학교 내의 인권침해의 제보와 권리구제신청의 접수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인 정착화를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참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최 측과 참석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토론문 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별첨] 인권침해 구제신청서

				<b>접수번호 :</b>
<b>신 청 인</b>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연락처		피해학생과의 관계	
	주 소			
<b>피해학생</b>	성 명		소속학교	
	연락처		학년 반	
	주 소			
<b>피신청인</b>	기관명 또는 관련인			
<b>진정내용</b>				
<b>증거서류</b>				
년    월    일 위 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서명)</span> <b>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귀하</b> 참조 :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				

## 가장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발칙한

“학생이 함께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를 위한 학생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

미소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학생인권팀)

## 1. 학생참여?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법이지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사회에 알리고 반영시키려 노력하는 참여과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참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참여권’은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참여는 학생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과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학생회, 동아리 같은 학생 자치 기구에서 활동을 하거나 서명운동, 집회, 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들 모두를 학생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학생참여는 학생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국제적으로도 ‘UN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조약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수많은 학생들이 요구해 온 권리입니다. 무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학생들은 학생참여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했습니다.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때 뿌려진 격문에는 「교우회 자치권을 확립하라」, 「교내외에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요구들은 1998년의 청소년 헌장의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와 같이 국가적 선언에도 반영됩니다. 현재에 이르러 학생 참여는 초·중등교육법<sup>1)</sup>과 청소년기본법<sup>2)</sup>,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등 여러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장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학생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2. 학생참여의 현실

역사적으로 학생들에 의한 학생참여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목소리들은 학생참여가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법률들도 학생참여가 꼭 필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학생 참여의 현실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생참여가 법률에 명시되어도 여전히 현재의 학생들은 수십 년 전의 학생들이 요구하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학생참여마저도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학생참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300일이 훌쩍 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기구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하 학생참여단)<sup>3)</sup>이 출범한지 어느덧 200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학교 현장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기 전이나 지금이나 학교의 모습은 똑같기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학생참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교에는 학생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학생자치기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이러한 학생자치기구를 마음대로 만들거나 운영하지 못합니다. 학생회가 회의를 하려고 하면 교사가 회의하는 장소에 들어와서 회의 내용에 간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학생회가 회의를 할 수 없게 막기도 하는 등 교사들은 사사건건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합니다. 이렇듯 학교에서 학생자치기구는 학생참여를 보장한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올해 전국의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sup>4)</sup>를 보면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58.5%에 불과했으며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47.8%, 학급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51.8%였습니다. 학생들의 절반이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학생자치기구가 이렇듯 유명무실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다른 방식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들 또한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설문조사 혹은 서명을 받거나,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1인 시위를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고 학교 안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 교사와 학교는 징계를 주겠다고 하니 퇴학을 시키겠다고 하니 하면서 겁을 주고 탄압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아무리 학교 안에서 학생참여 탄압과 인권침해 등을 겪어도 누구에게 호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김성기(2012). <학생자치와 학교공동체>.

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교육청 등에 신고하고 싶어도 혹시나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거나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법적 기구인 학생참여단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참여단은 교육청의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꾸려진 참여기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울학생들은 학생참여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애초에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참여단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출범 200일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학생참여단이 실질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체에 100명에 달하는 학생참여단 위원들은 지금까지 학생참여와 학생인권을 위한 그 어떤 성과도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전달하는 것이 학생참여단의 기본적인 역할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b>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b>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각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서울 등의 지역에선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학칙을 제·개정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학생인권조례 제19조」의 내용에 따라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회장과 부회장 등의 일부 학생들에게 형식적으로만 의견을 받고 반영은 하지 않는 등 조례에 명시된 과정과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대

**표10. 학교안의 교칙 개정 절차에 대한 응답**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은 되지 않는다	
	9.3% (118)	25.1% (320)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으며, 잘 반영된다	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다.	
11.7% (149)	28.2% (359)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전혀 없다	무응답	전체
	23.9% (305)	1.9% (23)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10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표와 학부모 대표, 교사대표 몇 명만이 학칙 제·개정 과정을 전부 처리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칙이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 3. 학생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들

#### ▶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들

그렇다면 이처럼 학생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어른들’과 우리 사회는 학생참여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인 학생참여를 그저 민주주의를 미리 연습하는 ‘참여 체험학습’, ‘민주주의 훈련’ 정도로, 안 해도 상관없는 부가적인 ‘옵션’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학생들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참고용’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학생들을 ‘어른들’과 동등한 주체로서 바라보지 않는 차별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인식은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모자라고 ‘미성숙’하다는 편견과, 그렇기에 학생들 스스로 어려운 일을 할 수 없다는 식의 생각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생각은 다음의 기사에서 잘 타나납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위반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두발과 휴대전화 소지 등을 담은 학교 규칙(학칙)을 자유롭게 개정하라고 했지만 이를 따라서는 안 되며,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어기는 학교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였다.

이 글은 교육청에서 올린 게 아니었다. 광노현 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기 위해 뽑아놓은 학생 조직인 ‘학생참여단’이 작성해 게재한 글이었다. 학생참여단은 이 조사가 교육청의 입장인 것처럼 교육청 로고가 박힌 공식 보도자료 서식에 맞춰 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썼고, 온라인 설문조사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학생참여단은 초·중·고교생 1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광 전 교육감이 수감된 후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학교의 학칙 개정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는 것이 아닌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인데 이것과 배치된 글을 ‘광노현의 학생들’이 각 학교에 홍보한 셈이다.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는데도 담당 장학사는 “몰랐다”고 하더니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글을 삭제했다. (후략)

**- <몰러난 광노현 교육감... 몰러나지 않는 학생참여단>, 조선일보, 2012. 10. 24.**

위 기사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기반 하여 만들어진 학생참여단을 ‘광노현의 학생들’이란 표현을 써 가며 마치 광노현 전 교육감의 뜻에 따라, 광노현 전 교육감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염연히 학생참여라는 목적을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학생참여단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엔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어”와 같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권위적인 문화와 분위기

또한 우리 사회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학생들을 좋아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것을 강요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걸 ‘반항’과 ‘탈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어른들’과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은 하기 싫더라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일일이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권위적인 문화는 학생들을 통제와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른들은 두발규제, 강제야자 등등을 통해 학생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존재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체벌을 포함한 온갖 처벌을 다 동원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음대로 벌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권위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와 학교에선 학생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리 없습니다.

### ▶ 지원 따윈 없음

학생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식 때문에 학생참여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런 저런 법들에 학생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선 학생참여에 대한 지원이 없다시피 합니다. 학생들이 학생회나 동아리를 꾸리고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돈도 없을 뿐더러 함께 모여 얘기할 학생회실이나 동아리방 같은 제대로 된 장소조차 없습니다. 말로는 학생참여 보장을 외치면서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는 셈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sup>5)</sup> 결과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은 56.3%였고 학생회가 필요한 비용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31.8%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고, 70%에 가까운 학생회가 학교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 학생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1.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학생회는 일반교실이나 교과교실, 다목적실 등을 이용해 가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참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학교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교육청 소속 법적 기구인 학생참여단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조직들은 모여서 회의할 공간 등을 손쉽게 정부 기관 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나 행정 업무들

5) 김성기(2012). <학생자치와 학교공동체>.

을 정부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참여단체에게는 예외입니다. 교육청에선 학생참여단체에게는 회의 장소를 잘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주더라도 다른 조직에 비해 훨씬 좁은 공간을 빌려줍니다. 학생참여단이 필요한 자료나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도 무시하거나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학생참여단에 대한 예산도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시만을 위한 무한경쟁교육

무한경쟁교육 또한 학생참여를 가로막는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기에 바쁩니다. 학교와 가정은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러니 학생들은 학생참여 활동을 하고 싶어도 활동을 할 만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른들’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며 탄압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입시 위주로 몰아가는, 비정상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은, 학생회 같은 참여 활동을 입시를 위한 ‘스펙’ 정도로만 전락시키고 본래의 학생참여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의 학생회가 학생참여와 자치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회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을 따기 위해 지원한 학생들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러한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할 리가 없습니다. 이는 학생참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에 가야 해서, 시험공부를 해야 해서, 입시 준비를 해야 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00명에 달하는 학생참여단 위원들 중 현재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 4. 실질적인 학생참여 보장을 위해서

▶ 이렇게 학생참여를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학생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참여를 보다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그 원인들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 순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 1) 사회적 문화와 인식 개선

학생참여를 방해하는 제도들을 바꿔내고 학생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낸다고 해도 단지 제도만으로는 학생참여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그 제도를 시행하는 건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면 그 어떤 제도라도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권위적인 문화와, 학생참여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별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학



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 2) 무한입시경쟁교육 개혁

지금과 같이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만 만들어버리는 입시경쟁교육이 계속되는 한 진정한 학생참여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인권침해적인 과도한 입시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유서 깊은(??) 경쟁교육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현재의 입시경쟁교육에 대해 의문점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오직 경쟁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교육 체계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되는 상호 협력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 3) 학생참여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비록 법이 현실적인 적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부 등에 따라 학생참여에 대한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학생참여를 위한 법 제·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참여는 특정 지역의 학생들에게만 필요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법에 학생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그 보장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얼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생참여와 관련된 법들을 제·개정하여 학생참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내용들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까지 명시하는 등, 현실에서 학생참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학생회 법제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생참여와 자치활동은 사실상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를 법으로서 제도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학생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제도화하여 모든 학교에 학생회를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회를 공식적인 학생대표기구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칙 또는 학생회 관련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교외 학생회나 단체와 교류할 권리, 학교운영에 학생회 의견을 개진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사나 학교 측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생회의 활동내용이나 결정에 대해 교사나 학교 측에 의한 사전, 사후 승인 절차 등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들이 학생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도 지금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1) 학생참여 시간 보장

당장에 입시제도를 전면 개혁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치여 사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습이나 다른 보충수업을 핑계로 거의 열리지 않는 학급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학생 임원들이 학생자치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참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근무시간에도 노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sup>6)</sup> 학생참여단 또한 위원들이 학생참여를 위한 외부 활동에 참석할 때 공결로 인정을 해주는 등 학생참여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재정 및 공간의 지원 보장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들과 학생참여단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같은 학생자치기구들이 모이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간에 책장과 서류함, 작업용 컴퓨터 등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참여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생참여단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예산에 학생참여단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 학생참여단 전담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생참여단의 일상적인 회의부터 실질적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3) 학생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폐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외부 활동 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게 하는 등 학생참여를 방해하는 학칙들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 개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두발규제, 강제야자, 체벌 등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온갖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으며,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 마음대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학칙과 제도들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길들이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을 통제하고 학생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들을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4)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 개정

서울의 각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권침해적

6)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 제 46조 [교원노조 활동의 보장]

③ 다음 각 호의 조합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정책협의회
3.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지부대의원대회 참석
4. 지부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5. 지부 각 부서장의 회의 참석

인 학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원칙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학칙 개정을 지시하고 감독해야 할 교육청은 무책임하게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학칙 개정에 대한 공문과 안내문을 각 학교들에 내려 보내고 조속한 학칙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학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칙 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일선 학교들의 학칙 개정 실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 5) 인권침해 제보 및 비밀보장 시스템 구축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 신고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당연한 참여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꺼립니다. 혹시나 자신의 신원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청 등에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한 학생들의 신분이 학교에 알려져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의 인권침해를 신고하고, 이를 통해 학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인권침해의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인권침해 제보학생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 6) 학생참여단의 권한 보장 및 활성화

학생참여단의 실질적인 참여권한과 발언권이 보장되어 의견이 비중 있게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받아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있게 해야 합니다. 조례엔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까진 없는 지역교육지원청 별 학생참여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각 지역별로 학생들이 학생참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좀 더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이 교육청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7)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참여단 활동 금지

학생참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참여단은 가능한 의원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되기 보다는, 학생참여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펙’을 목적으로 한 학생참여단 위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생참여단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학생참여단 활동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소위 ‘스펙’으로 쓰이지 않아야 하며, 학생참여단을 처음 모집할 때부터 학생참여단 관련 활동들을 스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진정으로 학생참여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생참여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8) 모든 학생들의 참여 보장

현재 학생회와 학생참여단을 비롯해, 많은 학생참여기구들은 ‘스펙’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학생들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린 측면이 존재합니다. 학생참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학생참여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이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학생참여기구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참여기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반 학생들도 학생회에 안전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만들어 학생참여기구에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총회 등의 방식들 또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참여단의 공식적인 웹 페이지를 만드는 등 일반 학생들이 쉽게 학생참여단의 존재를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단과 일반 학생들 사이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 9) 학생참여를 위한 학생, 교사 매뉴얼

현재와 같이 학생참여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참여에 대해 알리고 학생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칙 제·개정 절차, 학생참여단 등 학생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과 학생회나 동아리 참여, 인권침해 신고,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 집회&시위,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학생참여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매뉴얼을 교육청 차원에서 작성하고 모든 학교에 배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매뉴얼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대상으로 하여 교사들도 학생참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워 더 이상 교사들이 학생참여를 억압하는 휘방꾼이 아닌, 학생참여를 돕고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10) ‘학생참여지원센터(가칭)’ 설치

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학칙 개정을 비롯해 학생참여를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별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 및 학생참여단에 대한 파악과 지원,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참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담하여 현실을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참여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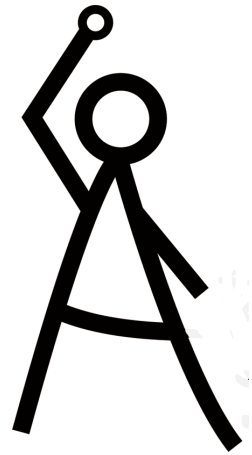
## 5. 마무리하며

앞에서 말한 방법들이 실질적인 학생참여를 위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만’으로 학생참여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 해도 그 제도를 시행하는 건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면 그 어떤 제도라도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참여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차별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현재 학생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학생들에게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진정한 학생참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에 의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온갖 규제와 제한을 걸어 놓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의지 있는 학생이라도 그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참여에 대해 무언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학생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을 문제 삼고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참여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학생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보장되어야만 의지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학생참여단을 비롯한 현재 존재하는 학생참여기구들이 앞장서서 조금씩이나마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학생참여기구들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힘)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학생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시간과 공간이 보장될 때 비로소 학생참여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 학생참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카 페 : [asunaro.or.kr](http://asunaro.or.kr)

메 일 : [asunaro@asunaro.or.kr](mailto:asunaro@asunaro.or.kr)

트위터 : [@onlyasunaro](https://twitter.com/onlyasunaro)

연락처 : 070-7517-1908